#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규정」

일부개정 2024. 4. 23. 규정 제904호

#### 1. 개정이유

- 도서관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
- 지역사회 개방에 맞춰 학술정보원 규정의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도서관 휴관일 명문화 및 자료열람 대상 조정(안 제7조, 제9조)
- 대출 불가 자료 및 저작권법 준수 명시(안 제10조)
- 제재에 따른 대출정지 기간 조정 및 대출정지 감면 명시 (안 제11조)
- 도서관 내 질서유지 행위 현행화 및 제11조(제재)에 맞게 수정(안 제15조)

### 3. 주요 **토의과제** : 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참고)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붙 임: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규정」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한국체육대학교(이하 "본교 "라 한다)"를 "한국체육대학교"로 한다.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"종합정보시스템"을 "통합정보시스템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학술정보원(도서관)은 제1항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할 수 있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학"을 "한국체육대학(이하 "'본교 "라 한다)"으로 한다.

-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2항) 제1호 중 "시간강사"를 "강사"로, "대학원생), 휴학생 및 졸업생"을 "대학원생)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원장이 허가한"을 "원장의 승인을 받은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  - 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
  - 2.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- 제8조제1항의 "<mark>학생증</mark>"을 "열람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"<mark>학생증</mark>"을 "열람증"으로 한다.
- 제9조제1항제5호 및제6호를 삭제하고,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7. 그 밖에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원장이 별도로 정함
-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4. 이용기간 만료
-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대출이 불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.
  - 1. 참고자료
  - 2. 정기간행물
  - 3. 비도서자료
  - 4.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자료
  - ④ 「저작권법」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.
- 제11조제1항제1호 중 "연체기간의 2배"를 "연체기간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⑦ 제1항에 따른 대출정지 기간은 도서관 근로봉사로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 .
-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.
  - 1.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(소음, 흡연, 집회 등)

- 2. 자료의 무단 반출
- 3. 열람증 및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

## 부 칙(제904호, 2024. 4. 2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u>한국체육대학교(이하</u><br><u>"본교"라 한다)</u> 학술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<br>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| 제1조(목적) 한국체육대학교<br>  |
| 제2조(임무) ① 학술정보원의 임무는 국내<br>외의 자료를 수집, 정리, 보존, 전산화하여<br>교직원과 학생들의 연구 및 학습 자료로<br>제공하고, 교수연구지원, <u>종합정보시스템</u><br>및 학내망을 운영·관리함은 물론 학생들의<br>컴퓨터 관련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는데<br>있다. | 제2조(임무) ①  |
| 제3조(조직) ① (생 략) ②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<br>임명하며,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<br>업무를 통할하고 <u>대학</u> 의 정보화책임관<br>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  | 제3조(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 |
| 제7조(열람) ① (생 략) < <u>신 설〉</u> ②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. 1. 본교의 교직원, <u>시간강사</u> , 재학생(학부 및 <u>대학원생)</u> , 휴학생 및 졸업생  | 제7조(열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 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.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|
| 2. (생 략)<br>3. 그 밖에 <u>원장이 허가한</u> 자  | 2. (현행과 같음)<br>3 <u>원장의 승인을 받은</u>   |
| 제8조(출입 및 이용) ① 도서관 출입 및 이용<br>시 <u>학생증</u>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.<br>② 직원의 요구가 있거나 자료 대출 시<br><u>학생증</u>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.   | 제8조(출입 및 이용) ①<br>열람증<br>②<br>열람증  |
| 제9조(대출권수, 기간) ① (생 략)<br>1. ~ 4. (생 략)  | <b>제9조(대출권수, 기간)</b> ① (현행과 같음)<br>1. ~ 4. (현행과 같음)  |

| 현행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5. 졸업생       3책 14일         6. 휴학생       3책 14일         <신 설〉   | 5. 삭제         6. 삭제         7. 그 밖에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        원장이 별도로 정함   |
| ② (생 략)         ③ (생 략)         1. ~ 3. (생 략)         4. <u>졸업생 이용기간 만료(매년 2월말 기준</u> )         ④ ~ ⑦ (생 략) | (2) (현행과 같음) (3) (현행과 같음) (1. ~ 3. (현행과 같음) (4. 이용기간 만료) (4) ~ ⑦ (현행과 같음)   |
| 제10조(자료열람) ①·② (생 략) ③ 자료열람실을 출입할 때에는 가방 및 소지품을 지정된 곳에 두어야 한다.  | 제10조(자료열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대출이 불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. 1. 참고자료 2. 정기간행물 3. 비도서자료 4.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자료 ④ 「저작권법」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                    |
| 제11조(제재) ① (생 략) 1. 일반자료 : 연체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2. ~ 5. (생 략) ② ~ ⑥ (생 략) < <u>신 설</u> 〉                       | 할 수 없다.         제11조(제재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1 연체기간         2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⑦ 제1항에 따른 대출정지 기간은 도서관 근로봉사로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 |
| 제15조(질서유지) ① (생 략) 1. 고성방가 및 잡담 2. 흡연 및 식음행위 3. 인쇄물 기타 물품의 배포 4. 집회 5. · 6. (생 략)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  | 제15조(질서유지) ① (현행과 같음) 1.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(소음, 흡연, 집회 등) 2. 자료의 무단 반출 3. 열람증 및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 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 〈삭 제〉 4. · 5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|
|   | 부 칙(제904호, 2024. 4. 23.)<br>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  |